

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[별지 제9호서식] <개정 2020. 7. 7.>

##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명세 보고서

등록번호	2021-69-1호	모집기간	2021. 4. 28. ~ 2021. 12. 31.
모집자 (개인 또는 법인·단체)	(사)더불어함께새희망 문진환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7, 3층 (전화번호: 1644-7113)		117-82-05954
모집목적	국내취약계층 및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		
모집등록금액	1,000,000,000		

### 모집금품의 총액 및 수량

1. 현금			
모금방법	모금액(원)	비고	
오프라인 모금(거리캠페인)	107,555,000	10.75%	
합계	107,555,000		
2. 물품			
품명	물품건수	물품가액	비고
해당사항 없음			
합계			
3. 기타수입: 78,440 원 [이자수익]			

### 기부금품의 사용명세

사용항목	금액(원)	사용방법	비고
취약계층 지원사업	60,874,000		※ 10.75%
시설지원사업	46,725,940		
모집비용	33,500		
합계	107,633,440		

모집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일

2022년 6월 22일

- 첨부: 1. 「공인회계사법」 제7조에 따라 등록된 공인회계사 또는 「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이 작성한 회계감사보고서 1부(기부금품 모집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)
2. 기부금품 사용에 따른 영수증 등 지출증명서류(기부금품 모집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만 해당합니다)

「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명세를 보고합니다.

2022년 6월 22일

모집자 사단법인 더불어함께새희망

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 귀하

